

예산군의회운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제안이유

- 2005. 6. 9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었기에 상임위원회 소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5. 6. 9 공포되어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었기에 상임위원회 소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.
- 따라서 총무위원회 소관에 “사회복지과, 보건”를 삽입하고, “사회산업위원회”를 “산업건설위원회”로 하며, “사회복지과, 보건소”를 삭제하고, “재난안전관리과”를 삽입. (안 제3조)

참고사항

-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

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예산군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있어서 총무위원회 소관에 사회복지과와 보건소를 삽입하여 당초 6개 실·과를 8개 실·과로 늘리고,
- 사회산업위원회 명칭을 산업건설위원회로 변경하여 기존의 사회복지과와 보건소를 삭제하고, 재난안전관리과를 삽입하여 당초 11개 실·과를 10개 실·과로 조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보장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40호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05. 8. 22 .
발 의 자 : 신영균,조기덕,전태수

1. 제안이유

- 2005. 6. 9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었기에 상임위원회 소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군의 회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.
- 따라서 “사회산업위원회”를 “산업건설위원회”로 한다.(안 별표)

3. 참고사항

-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

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”를 “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로 하며,

제3조 제2항중 제2호에 “사회복지과, 보건소”를 삽입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“사회산업위원회”를 “산업건설위원회”로 하며, “사회복지과, 보건소”를 삭제하고, “재난안전관리과”를 삽입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① 생략</p> <p>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생략</p> <p>2. 총무위원회 기획감사실, 경영문화관리실, 종합민원실, 자치행정과, 주민지원과, 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3. <u>사회산업위원회</u> <u>사회복지과</u>, <u>환경보호과</u>, <u>산업과</u>, <u>산림축산과</u>, <u>지역경제과</u>, <u>건설과</u>, <u>도시과</u>, <u>보건소</u>, <u>농업기술센터</u>, <u>공공시설관리사업소</u>, <u>상하수도사업소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.</p>	<p>제3조① 생략</p> <p>② -----.</p> <p>1. 생략</p> <p>2. 총무위원회 ----- ----- 사회복지과,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3. <u>사회산업위원회</u> <u>환경보호과</u>, <u>산업과</u>, <u>산림축산과</u>, <u>지역경제과</u>, <u>건설과</u>, <u>도시과</u>, <u>재난안전관리과</u>, <u>농업기술센터</u>, <u>공공시설관리사업소</u>, <u>상하수도사업소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.</p>